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2026년



성산요양원

운영규정-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 목적

본 규정은 성산요양원(이하 시설) 입소자 개개인 혹은 전체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소자 생활규정을 제시함은 물론 입소자뿐 아니라 시설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생활자의 “삶의 질” 향상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.

제2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
-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49명으로 한다.
- ② 입소 대상자는 「노인복지법」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, 시설은 홈페이지, 홍보물 및 상담 등을 통해 입소 안내 및 모집을 한다.

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① 이용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결하며, 장기요양등급 변경, 계약내용 변경 또는 기타 사유 발생 시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② 장기요양보험 비급여 대상자 및 기타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입소자(보호자)와 시설 간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- ③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며, 수가 및 비용 변경 시 시설 내 게시, 안내문 또는 보호자 안내 등으로 공지한다.

※ 2026년도 노인요양시설 (2.1:1 기준, 1일 기준)

등급	25년 노인 요양 시설 수가	26년 노인 요양 시설 수가	26년도 본인부담금(원)			
		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	수급 0%
1	90,450	93,070 (+2,620)	18,614	11,168	7,446	0
2	83,910	86,340 (+2,430)	17,268	10,361	6,907	0
3~5등급	79,240	81,540 (+2,300)	16,308	9,784	6,523	0

※ 2026년도 본인부담금 (30일 기준)

등급	급여비용 안내				식재료비 30일기준 (1일1식 2,300원)	합계		
	급여비용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	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
1	2,792,100	558,420	335,050	223,360	207,000	765,420	542,050	430,360
2	2,590,200	518,040	310,820	207,210	207,000	725,040	517,820	414,210
3~5	2,446,200	489,240	293,540	195,690	207,000	696,240	500,540	402,690

제4조 계약자, 당자의 의무

시설과 입소자(보호자)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며,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시설의 의무

- ① 입소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신변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. 다만,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적절한 급여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.
- ④ 의료기관 입원 시 의료행위 및 간병은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과 기준에 따른다.

2. 입소자 및 보호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등 제반 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한다.
- ② 시설의 운영규정 및 공동생활 질서를 준수하며,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한다.
- ③ 시설 내 위생 및 청결유지에 협조하며, 시설의 허가 없이 동물 사육 및 위험물 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보호자 및 연고자의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동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한다.
- ⑤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용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.

(3) 보호자의 의무

- ① 입소자의 건강상태, 질환, 복용약물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시설에 성실히 제공한다.
- ② 월 이용료,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등 입소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.
- ③ 주소, 연락처 및 기타 인적사항 변경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한다.

- ④ 장기출장, 연락두절 등으로 보호자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설에 통보한다.
- ⑤ 입소자의 병원 진료 및 입원 시 보호자는 진료 동의, 입·퇴원 절차, 간병 및 비용부담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보호자와 협의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① 입소자의 건강상태 변화 등으로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감염병 등으로 인해 공동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③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④ 시설 운영규정 또는 종사자의 정당한 안내 및 조치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시설 운영이나 타 입소자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
- ⑤ 폭력, 폭언, 반복적인 배회 및 위해행위 등으로 타 입소자의 안전 또는 공동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⑥ 입소자의 건강상태, 질환, 감염 여부 등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⑦ 기타 관계 법령 및 이용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6조 이용료(본인부담금) 및 비용 변경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이용료(본인부담금)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한다.

- ①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내용이 변경된 경우
- 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
- ③ 본인부담률 또는 감경기준이 변경된 경우
- ④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
- ⑤ 기타 관계 법령 및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경우

제7조 시설입소

- ① 시설 입소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입소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
- ②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중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입소할 수 있으며, 입소 여부는 입소상담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.

제8조 계약목적

시설은 입소 어르신의 신체적·정서적·사회적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고, 어르신의 존엄성과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9조 서비스 내용 및 부담

- ① 시설은 입소어르신에게 신체활동지원, 간호 및 건강관리, 기능회복훈련, 인지지원, 정서지원, 위생관리 및 기타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수가 기준을 적용하며, 입소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비용을 부담한다.
- ③ 장기요양 수가, 본인부담률 및 비급여 비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설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보호자에게 안내한다.
- ④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 또는 시설장의 승인에 따른 외박 시 비용 적용은 관련 법령 및 장기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다.

제10조 특별한 보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기준

- 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감염성 질환, 중증 이상행동, 응급상황 발생 위험 또는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,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과 공동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시설은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진료·입원, 격리,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관련 비용은 관계 법령 및 이용계약 기준에 따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며, 시설은 비용 발생 사유 및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.

제11조 시설물 사용

- ① 입소자는 시설 내 편의시설 및 공용시설을 시설 운영규정과 안전수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.
- ② 보호자, 가족 및 방문객의 시설 이용은 시설 운영방침 및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제한 또는 안내할 수 있다.
- ③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2조 의료서비스 제공 및 처리절차

(1) 간호(조무)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

- ① 간호(조무)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건강관리기록을 작성·관리한다.
- ②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혈압, 체온, 혈당, 체중, 복용약물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·기록한다.
- ③ 간호(조무)사는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투약관리, 건강관리 및 필요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.
- ⑤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, 건강상태 관찰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.

(2) 협약의료기관 진료에 관한 사항

- ① 협약의료기관은 관련 기준에 따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건강상태에 따라 처방, 건강관리 지도 및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협약의료기관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 및 약제비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

(3)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

- ① 시설은 어르신의 상태변화 또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병원진료를 지원한다.
- ② 정기진료 및 외래진료는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시설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119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.
- ④ 병원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.

(4) 전원 조치에 관한 사항

- ① 질환 악화 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병원 또는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다.
- ② 보호자가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과 협의 후 전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③ 시설은 전원 시 건강상태, 투약정보 및 필요한 기록을 관련 기관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연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.

제13조 시설입소자 보호 의무

- ① 시설의 직원은 「노인복지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소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② 시설의 직원은 입소자에 대한 폭언, 폭행, 방임, 차별 및 기타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시설은 관련 사실 확인 시 운영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시설의 직원은 입소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지침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.
- ⑤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의 건의사항과 고충을 성실히 처리하고,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.
- ⑥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and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
제14조 연고자 협조 의무

- ① 보호자 및 연고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, 질환, 복용약물 및 시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설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, 입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보호자 및 연고자는 주소, 연락처, 보호자 변경, 건강상태 및 기타 중요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보호자 및 연고자는 시설의 운영방침 및 생활규정을 준수하고, 입소자의 안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은 보호자 및 연고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·관리하여야 하며,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 연고자 권리

- ① 입소자는 시설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설에 상담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② 입소자는 서비스 이용 및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, 시설은 이를 운영에 참고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입소자는 생활환경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입소자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의견수렴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16조 입소자의 사고 및 배상책임보험

- ①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- ② 시설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보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시설은 투약관리, 낙상예방, 감염관리 및 응급대응 등 입소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-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시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.
 - 질환 악화, 노환 및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건강상 변화 또는 사망
 -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
 - 보호자에게 안내된 위험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
 - 천재지변, 감염병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
- ⑤ 시설은 사고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하여 화재보험,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⑥ 보호자 및 연고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시설에 성실히 제공하고, 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7조 입소자의 실종 및 행방불명

- ① 시설은 입소자의 실종 및 무단이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와 보호조치를 시행한다.
- ② 입소자의 실종 또는 무단이탈이 발생한 경우 시설은 즉시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③ 시설은 실종 발생 경위,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기록·관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④ 시설은 입소자의 인지상태 및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배회예방, 출입관리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.
- ⑤ 시설은 사고 발생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직원 교육 및 관리강화를 시행할 수 있다.

제18조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

- ①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안전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 후 실시한다.
- ② 외출 및 외박 시에는 사전에 시설에 신청하고 목적지, 연락처 및 귀원 예정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.
- ③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, 인지상태 및 안전위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안내 및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외출 및 외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

설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.

⑤ 시설은 감염병 예방, 재난상황 및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외출·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9조 입소자의 무단외출 및 이탈

① 시설은 입소자의 무단외출 및 이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와 보호조치를 시행한다.

② 입소자의 무단외출 또는 이탈이 발생한 경우 시설은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③ 무단외출 및 이탈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시설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.

④ 시설은 반복적인 무단외출 및 이탈로 안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또는 퇴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0조 입소자의 폭행 및 폭언

① 입소자는 다른 입소자 및 직원에게 폭행, 폭언, 위협 등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시설의 생활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은 폭행·폭언 등 문제행위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폭행·폭언 및 위해행위로 공동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또는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1조 퇴소 및 사후처리

① 입소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시설과 협의 후 퇴소할 수 있다.

②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 또는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건강상태 변화 등으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반복적인 폭력·위해행위 등으로 공동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장기 무단외출 또는 이용계약 위반 등으로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

③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 퇴소 처리하며, 시설은 관련 절차에 따라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.

④ 보호자 및 연고자는 퇴소 및 사후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2조 사망

- 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시설은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고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.
- ② 장례절차 및 장지 결정은 고인의 의사 및 보호자의 뜻에 따라 진행한다.
- ③ 보호자는 사망 후 시신 인수 및 장례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장례 및 사후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계 법령 및 지원기준에 따르며, 추가 비용 발생 시 보호자가 부담한다.
- ⑤ 시설은 종교, 관습 및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23 유류금품 처리

- ① 입소자 사망 후 유류금품은 관계 법령 및 고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며, 고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인계한다.
- ② 시설은 유류금품의 보관 및 인계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보호자 또는 상속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